

전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69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한창훈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71,733원 및 그 중 29,371,537원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1. 4. 8.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9. 체결한 재산분할을 29,371,7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9,371,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2. 피고 A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기업은행 C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보증하였다.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21. 3. 9. 기업은행 C지점에게 30,167,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대위변제금액 중 796,2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29,371,537원이고, 확정손해금 196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11. 21.부터 연 9%이다.

나. 피고들은 2011. 5. 4. 혼인하여 자녀(2011년생) 1명을 낳고 살다가 2020. 7. 9. 협의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7. 1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은 위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시세는 735,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9,86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은 465,720,000원인바, 위 가액 중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32,860,000원을 피고 A에게 분할하지 않고 가액 전체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 B에게 분할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할 취소의 범위가 이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금액으로서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혼인기간이 약 9년 정도 되었고, 피고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바,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참작되어 분할되어야 한다.

② 피고 A은 협의이혼 이전인 2019. 3. 1.경 피고 B에게 ‘앞으로, 주식투자를 절

대 하지 않겠음, 술 담배를 하지 않겠음, 언어폭력도 하지 않겠음, 바람을 피지 않겠음, 이를 어길 시

협의이혼에 동의해주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아이 양육권도 포기하고 D엄마가 원하는대로 모두 하겠음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A이 위 각서를 지키지 않자 위 각서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B의 협의이혼 요구에 응하고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 A의 주식투자, 술,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B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했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명의로 2014. 8. 29. 취득한 다른 아파트를 처분하고 피고 A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피고 B은 2017. 4.경부터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 A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B은 혼인기간 중 피고 A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목돈을 지급하여 주었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7억 3,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한 채권최고액 269,2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재산분할 이후 피고 B이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